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성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7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6일

발 의 자: 문성호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기덕, 김동욱,
김용일, 김원중,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 석, 박영한, 박철성,
박환희, 서준오, 소영철,
송경택, 아이수루, 유만희,
, 유정인, 유정희, 이상욱,
이영실,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정지웅,
최민규, 최재란, 허 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32
명)

1. 제안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미술관 관계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등 신규 시설 개관에 따라 미술관의 수집 대상이 미술 관련 자료로 확대되어 조례상 수집 대상의 정의 및 범주 정비 필요함(안 제2조).
-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체공휴일도 개관하도록 함(안 제4조제2호).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 라. 안 제2조 개정에 따른 용어 표기를 통일하되, 미술관자료의 수집단계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상의 미술관자료 개념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수집단계 이후 미술관에서 소장하여 보존 관리하는 미술관자료에 대해서는 소장미술관자료로 규정하되, 열람 또는 대여 대상은 범위를 넓혀 미술관자료로 규정함(안 제21조부터 26조까지).
- 마. 실제 운영과 불일치하는 미술관자료추천회의 구성을 현행화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명시함(안 제22조 및 제26조, 제31조제3항).
- 바. 운영자문위원회 외부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 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안 제28조제1항).
- .
- 사.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화함(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미술관”을 “미술관자료 중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3호) 중 “소장작품 및 관련자료”를 “미술관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술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소장자료”란 미술관자료 중 미술관의 소유자료를 말한다.
4. “대관“이란 미술관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집”이란 미술관자료를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별표 1」 과”를 “「별표」 와”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공휴일일”을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로 한

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0호) 중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 등”을 “미술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의 수립)”을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 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술작품을”을 “미술관 자료를”로, “작품수집계획”을 “미술관자료수집계획”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소장작품 구입)”을 “(미술관자료 구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장작품추천회의”를 각각 “미술관자료추천회의”로 하며, 같은 항 중 “한다), 미술관의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을 “한다) 및 관장이 지정하는 미술관의 학예연구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작품구입”을 “미술관자료구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장작품추천 회의에서는 소장작품”을 “미술관자료추천회의에서는 미술관자료”로, “작품 의”를 “미술관자료의”로, “소장작품 구입”을 “미술관자료 구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소장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술관의 소장작품을”을 “소장 미술관자료를”로,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을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을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은 소장미술관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을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은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술관 소장작품”을 “소장미술관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작품”을 “소장미술관자료”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소장작품 열람 등)”을 “(미술관자료 열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술관 소장자료”를 “미술관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2항의 소장자료”를 “미술관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소장자료”를 “미술관자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작품기증)”을 “(미술관자료기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을 “소장자(처)로부터 미술관자료기증신청”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를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안에서 기증미술품”을 “범위 안에서 기증미술관자료”로, “기증미술품의”를 “그 기증미술관자료의”로 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③ 수증심의위원은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시까지로 한다.

④ 미술관자료기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의원”을 “의원 및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단서 중 “작품수집”을 “작품구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중전의 <별표 1>)의 주요기능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서울특별시립경희궁미술관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명칭란 중 “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서울특별시립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로 하고, 같은 표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SeMA 창고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5동)
SeMA 백남준기념관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12-1 (창신동)
SeMA 벙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 76(여의도동)
서울특별시립미술아카이브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대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미술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자료를 말한다.
2. “소장작품”이란 미술관의 소유작품을 말한다.	2. ----- 미술관자료 중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신 설>	3. “소장자료”란 미술관자료 중 미술관의 소유자료를 말한다.
3. “대여”란 소장작품 및 관련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 미술관자료----- ----- -----.
4.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정 행위를 말한다.	4. “대관“이란 미술관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6. “수집”이란 미술관자료를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이 조례에 따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별
표 1」과 같다.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
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1. (생략)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3. (생략)

제9조(무료관람) ① 시장은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
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서 무료관람 대상으로 지정한
사람

5. (생략)

제3조(운영시설) -----
----- 「별
표」와 ----.

제4조(개관 및 휴관) -----

-----.

1. (현행과 같음)

2. -----

----- 공휴일 또
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일 -----

3. (현행과 같음)

제9조(무료관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등-----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 11. (생 략)

1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 17. (현행 제6호부터 제1호까지와 같음)

16.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
람

② (생 략)

제16조(대관료) ①·② (생 략)

③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
에 의거 징수한다.

④·⑤ (생 략)

제4장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 등

제21조(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의 수
립) 시장은 우수한 미술작품을
확보, 소장하기 위하여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
다.

제22조(소장작품 구입) ①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
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하되 소장작품추천회의와 가
격평가심의위원회, 제27조에 따
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대관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장 미술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

제21조(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
획의 수립) ----- 미술관자료
를 -----
미술관자료수집계획-----
--.

제22조(미술관자료 구입) ① ----

----- 미술관자료추천회의---

다.

② 소장작품추천회의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미술관의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작품구입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④ 소장작품추천회의에서는 소장작품 추천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작품의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소장작품 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 설>

제23조(소장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시장은 미술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다.

② 미술관자료추천회의-----

----- 한다) 및 관장이 지정하는 미술관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

③ 미술관자료구입-----

-----.

④ 미술관자료추천회의에서는 미술관자료 -----
----- 미술관자료의 -----
----- 미술관자료 구입-----
-----.

⑤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 소장미술관자료를

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
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
의 관리·수리·복원·복제·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은 소장
작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
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24조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
리) 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작품
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
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
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소장작품 열람 등) ① 시
장은 미술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
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장자료는 작품·
도록·CD·필름 등을 포함한
다.

③ 제1항·제2항의 소장자료 열

---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

②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은 소
장미술관자료-----

-----.

③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
은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
-----.

제24조(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 ① -- 소장미술관자료--

-----.

② ----- 소장미술관자료----

-----.

제25조(미술관자료 열람 등) ① -
--- 미술관자료-----

-----.

<삭 제>

② 미술관자료의 -----

람 또는 대여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장자료의 대여허가조건, 유료·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작품기증)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미술관자료-----

-----.

제26조(미술관자료기증) ① -----
--- 소장자(처)로부터 미술관자료기증신청--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③ 수증심의위원은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 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시까지로 한다.

④ 미술관자료기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
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20% 한도
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증미술품의 평가액은
미술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
서 심의·결정한다.

제2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
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
는 기간으로 한다.

③ (생략)

제31조(위원회 회의) ①·② (생

다.

⑥ -----

----- 범위 안에서
기증미술관자료 -----

----- 그 기증미술관자료의 --

-----.

제28조(위원회 구성) ① -----

---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
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만,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

의원 및 당연직 위원-----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위원회 회의) ①·② (현

략)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작품수집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별표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주요기능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37)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지 기능
서울특별시립남서울미술관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남현동 1059-13)	생활미술관 기능
서울특별시립경희궁미술관	종로구 새문안로 45(신문로 2가 2-1)	미술단체 기획전
서울특별시립북서울미술관	노원구 동일로204길 13(중계동 508)	공공미술 콤플렉스 기능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상암동 481-6)	레지던시 및 국제프로그램 운영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행과 같음)

③ -----

-- 작품구입-----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 치	<삭 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중구 덕수궁길 61 (서소문동 37)	
서울특별시립남서울미술관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남현동 1059-13)	
<삭 제>		
서울특별시립북서울미술관	노원구 동일로204길 13(중계동 508)	
서울특별시립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상암동 481-6)	
SeMA 창고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5동)	
SeMA 백남준기념관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12-1(창신동)	
SeMA 벙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 76(여의도동)	
서울특별시립미술아카이브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